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4

발의연월일: 2024. 6. 14.

발 의 자: 박홍배·김성환·김한규

민병덕 • 한준호 • 정진욱

김현정 · 김준형 · 민형배

문대림 · 이연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 료 공동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기상관측망에 대한 매년 계획만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기상관측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2(기상관측의 표준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 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5년마다 기상관측의 표준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 은 제20조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상측기 등 기상관측장비 규격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 2.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4.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방식 표준화에 관한 사항
 - 5. 기상청 및 관측기관 등 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 6.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③ 기상청장은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 ④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기관·단체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기상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20조에 따른 기 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고, 확정된 기본계 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기상청장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기상관측의 표준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전실> 세4조의2(기상관측의 표준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5년마다 기상관측의 표준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란 한다.의 경우 기상청장은 제20조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기상측기 등 기상관측장비교적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2.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사항2.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의수립에 관한 사항3.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방식 표준화에 관한 사항5. 기상청 및 관측기관 등 관련기관 간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4조의2(기상관측의 표준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 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5년마다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5년마다 기상관측의 표준화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20조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기상측기 등 기상관측장비규격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2.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사항2.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방식 표준화에 관한 사항5. 기상청 및 관측기관 등 관련 |

- 6.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확보에관한 사항
- 7. 그 밖에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사항
- ③ 기상청장은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보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기상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20조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고,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

제20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생략)

<u><신 설></u>

2. ~ 11. (생략)

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 1의2.
 제4조의2에 따른 기본계

 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에 관한 사항
- 2. ~ 11. (현행과 같음)